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대학병원 내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 의사소통 자원체계 마련 등〉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811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81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22.
- (3) 회 부 일 : 2024. 11.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가 소수에 불과하여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어통역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유발되고,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내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 ④ (생략)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u><신설></u>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 ----- ----- -----. 제9조의2(한국수어 통역서비스 등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

현행	개정안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9. (생략) <신설>	<u>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u>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의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 지원) ① ----- ----- ----- ----- ----- ----. 다만,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u>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다)의 의사소통</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신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u>지원체계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u>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20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어통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로는 ‘의료분야’(4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의사소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지원 정책으로는 ‘모든 공공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34.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¹⁾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성이 높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내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수어 통역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양적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²⁾

- 먼저,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2023년말 기준,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2,019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 중앙 및 지역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어통역사가 1,070명(참고자료 1: 수어통역센터 현황),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채용되어 근무 중인 수어통역사는 13명으로 보고됨(참고자료 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황).

그러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경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³⁾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84개

1)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2) 문자통역의 경우는 별도 자격증 없이 속기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소가 추가로 당연지정 되면서, 기존 30개소에서 114개소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수어통역사를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므로, 향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수어통역사 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⁴⁾

현재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은 전국에 총 16개소로(분원 포함), 개정안에 따른 조치와 동시에 원활하게 수어통역사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3: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현황).

- 다음으로,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의료 관련 수어통역 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되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수어통역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⁵⁾ 우리나라의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제도에는 의료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수어통역사 양성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의료 등 특정 전문분야를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 체계 및 기존 수어통역사를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질 높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 제22조제1항에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의사소통 지원 체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현행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용 지원 여부가 재량사항으로

4) 다만, 장애친화검진기관 중 국립대학병원이 지정된 경우는 14개소임(참고자료 2 참조).

5) 이수현, 최민지, & 한은아. (2021).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및 의약품 안전사용 저해 요인 관련 심층면접조사. 한국임상약학회지, 31(4), 311-323.

규정되어 있는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소통 지원체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지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액 지원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론적인 가능성 차원의 문제로는 수어통역사 고용 비용에 비하여 과태료 부담(500만원 이하)이 적을 수 있어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이 지연될 우려도 있음.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의료법」에 비해 다소 과도하다는 입장임.

-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제36조, 제63조),⁶⁾
- 교육 실시, 각종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92조).⁷⁾

6)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 제41조, 제41조의2제1항·제4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7) 「의료법」 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1의4.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종합병원 내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8호)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2025년부터 등록장애인의 보편적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료 및 전·후 단계에서 코디네

4. 삭제

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2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89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의3.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의4.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3의5.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6.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터, 수어통역사 등이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사업 운영 효과, 장애인 이용 추이, 수어통역사 배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무화 여부 검토 필요

나. 기획재정부(신중검토)

-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5개소, 총 2억 2,500만원)의 추진성과에 따라 사업지속 필요성 및 추후 사업 확대 여부 등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수어통역사 의무배치 등은 수어통역사 현황, 장애인의 병원 이용 현황 등 수요와 공급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선행 필요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수어통역센터 현황〉

2023.12월말 현재(단위 : 개소,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206	26	7	6	1	0	5	3	2	32	19	12	15	15	21	21	20	1
종사자 (현원)	1,070	154	37	33	34	0	31	20	7	191	91	54	75	60	91	101	74	17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황〉

2024. 7월 말

연번	소재지	의료기관명	수어통역 채용 여부	채용인원
1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의료원	○	1
2	대전 서구	대청병원		
3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1
4	강원 원주시	강원도 원주의료원	○	1
5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1
6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	1
7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1
8	제주 제주시	중앙병원		
9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의료원	○	1
10	부산 남구	부산성모병원	○	2
11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	1
12	경남 진주시	진주고려병원		
13	경남 김해시	조은금강병원		
14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	1
15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16	부산 연제구	연제일신병원		
17	경북 경산시	경북권역재활병원		
18	부산 사상구	좋은삼선병원		
19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21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		
22	경남 밀양시	밀양병원		
23	인천 남동구	국제바로병원		
24	광주 광산구	우리동네의원		
25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26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27	충남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8	전남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29	전남 강진군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30	전남 장흥군	장흥통합의료병원		
31	강원 강릉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32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	1
33	강원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34	강원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35	강원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36	강원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37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38	경남 거창군	거창적십자병원		
39	경기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40	경기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41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42	경기 파주시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43	경기 포천시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44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45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연번	소재지	의료기관명	수어통역 채용 여부	채용인원
46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47	경북 김천시	경상북도김천의료원		
48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49	경북 포항시	경상북도포항의료원		
50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51	서울 관악구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52	광주 광산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53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54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55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56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57	경기 화성시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58	대전 대덕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59	강원 동해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60	전남 순천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61	강원 정선군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62	경남 창원시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63	강원 태백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64	경기 안산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65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66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67	대전 대덕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68	대전 서구	대전세종충남 넥스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69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70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71	경기 부천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72	광주 남구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73	경북 상주시	상주적십자병원		
74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치과병원		
75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76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77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78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서남병원	O	1
79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서북병원		
80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81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은평병원		
8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83	경북 문경시	시립문경요양병원		
84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치과병원		
85	경북 영주시	영주적십자병원		
86	경북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87	인천 옹진군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88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89	강원 정선군	재)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		
90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91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치과병원		
92	전북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연번	소재지	의료기관명	수어통역 채용 여부	채용인원
93	전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노인요양병원		
94	전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95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96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치과병원		
97	전북 전주시	전주시립요양병원		
98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99	제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100	전북 진안군	진안군의료원		
101	경남 창원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102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103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104	충남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05	충남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06	충북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107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108	경남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		
109	서울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110	대구 달서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111	부산 사상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112	서울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113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114	전남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주1): 볼드 처리는 국립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주2): 장애인건강검진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나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한국농아인협회, 지역수어통역센터, 복지관 등)에 서비스 위탁도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3: 국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 병원 현황〉

(‘24년 9월 기준, 단위 : 백만원, 분원 포함)

연번	병원명	정원(현원)	허가병상 (특수병상)	‘24예산	’05~‘24 국고지원
1	강원대	1,894(1,726)	637(61)	240,779	51,245
2	경북대	5,494(4,681)	1,845(213)	982,181	152,251
3	칠곡경북대병원				
4	경상국립대	4,102(3,663)	1,467(349)	592,517	125,459
5	창원경상국립대병원				
6	부산대	6,948(6,164)	2,472(305)	1,318,657	137,419
7	양산부산대병원				
8	서울대	14,245(12,620)	3,126(348)	2,933,271	229,270
9	분당서울대병원				
10	전남대	5,488.5(4,756)	1,939(194)	1,051,059	73,257
11	화순전남대병원				
12	전북대	3,070(2,802)	1,150(163)	561,236	93,683
13	제주대	1,927(1,624)	600(53)	294,345	109,469
14	충남대	5,051.6(4,391)	1,236(123)	925,076	162,910
15	세종충남대병원				
16	충북대	2,665(2,532)	804(87)	456,250	51,215

자료: 보건복지부